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동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595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8일

발 의 자: 신동원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곽향기, 구미경, 김규남, 김길영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태, 김재진, 김춘곤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 석, 박춘선, 박환희, 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 옥재은, 유정인, 윤기섭, 이경숙, 이병윤, 이봉준, 이상욱, 이종배, 이종태, 이희원, 임춘대, 장태용, 최민규, 최유희, 최진혁, 홍국표 의원(40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조례상 용적률을 1.2배 완화 적용 받아왔으나, 신축매입약정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85조제3항제1호가 개정되면서 그 의무기간이 삭제 됨에 따라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- 특히, 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반 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신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에 관계없이 용적률 완화(안 제55조제 14항 신설)
- 나. 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은 현행유지(안 제55조제15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14항부터 제24항까지를 각각 제15항부터 제2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5항(중전의 제14항)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목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”를 “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”로 한다.

- 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시장은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5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 ① ~ ⑬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목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임대주택건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하로 용적률을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.</p> <p>1. 2. (생략) ⑮ ~ ㉔ (생략)</p>	<p>제55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 ① ~ ⑬ (현행과 같음) 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시장은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.</p> <p>⑮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 ⑯ ~ ㉕ (현행 제15항부터 제24항까지와 같음)</p>